

◎ 問題의 提起 ……

→ 奢侈의 極이라 불리우는 寶石類에 대한 稅率이 100%로, 揮發油의 基本稅率이 160%로 규정된 現行 特別消費稅法 第1條에 침침한 눈의 焦點을 맞추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슴속으로 느껴진다.

많은 理論이 있고 合目的的 當爲論이 台頭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꾸만 고개를 드는 疑懼心은 떨쳐버려지지 않는다. ←

# “石油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는 과연 높은가”



金 泰 允

(大韓石油協會 · 業務部長)

## 1. 머리말

自然人 또는 法人이 영위하는 經濟活動 및 사회적 활동과 法律的 事實에 의해 歸屬되는 所得 (利潤)이나 資產의 증대로 担稅者와 납부하여야 할 稅額이 결정되는 租稅가 아닌 財貨나 用役의 유통과정이나 소비에 一義的으로 부과되는 間接稅가 모두 그러하듯이, 石油類製品에 부과되는 特別消費稅(이후, 77년 6월 30일 이전에 石油類稅法에 의해 부과되었던 것과 77년 7월 1일 이후 現行 特別消費稅法에 의한 것을 총칭하여 「石油類稅」라고 할 것임)

는 石油類製品出荷價格에 全額 府加되어 최종소비자가 價格을 형성하므로 이는 經濟學의 初보이론을 援用할 나위도 없이 各石油類제품수요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석유류제품별 수요패턴과 量은 국가전체의 石油類가격구조와 산업구조편성에 중요한 要素가 되고 있다.

한편 石油類製品에 부과되는 間接稅가 財政歲入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품의 수요나 공급측면에서만 高찰된다면 지나친 偏見과 我執에 치우친 事實만이 열거될 우려가 있는 가 하면, 巨視的인 접근방법에 의해서만 分析된다

면 자칫 核心을 벗어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통하여 유능한 전문가가 다각도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本稿는 언젠가 누구에 의해서든지 提起되어 논의 되어야 하고, 또 精油業界와 다른 산업계의 当面課題이기도 한 石油類稅에 관한 기본조사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石油類稅의 小史

60年代初까지 産業의 脆弱性과 經濟의 후진성으로 에너지消費構造 및 그 절대량이 前近代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少量의 수송용 및 난방용 油類를 全量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또 이에 부과되는 租稅도 일반적인 輸入物品에 적용하는 關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62年 第1次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精油工場의 建設계획이 확정되자 61년 12월 8일 法律 第825호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石油類稅法」이 제정되었다.

그 후 適用例의 미약으로 존재가치가 뚜렷치 못했던 이 石油類稅法은 64년 4월 大韓石油公社의 蔚山精油工場이 준공되어 정상가동이 개시되면서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64년 7월

8일 많은 部分의 改正·補完을 거쳐 單一稅目으로서 최대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租稅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후 76년부터 77년에 걸쳐 일련의 租稅革命이 단행되면서 附加價值稅의 도입과 아울러 각종 間接稅를 統合·單一化한 特別消費稅가 신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石油類稅도 特別消費稅의 한 項目으로 흡수되었으며, 77년 7월 1일부터 石油類稅法이 아닌 特別消費稅法에 의해 석유류제품에 대한 間接稅의 課稅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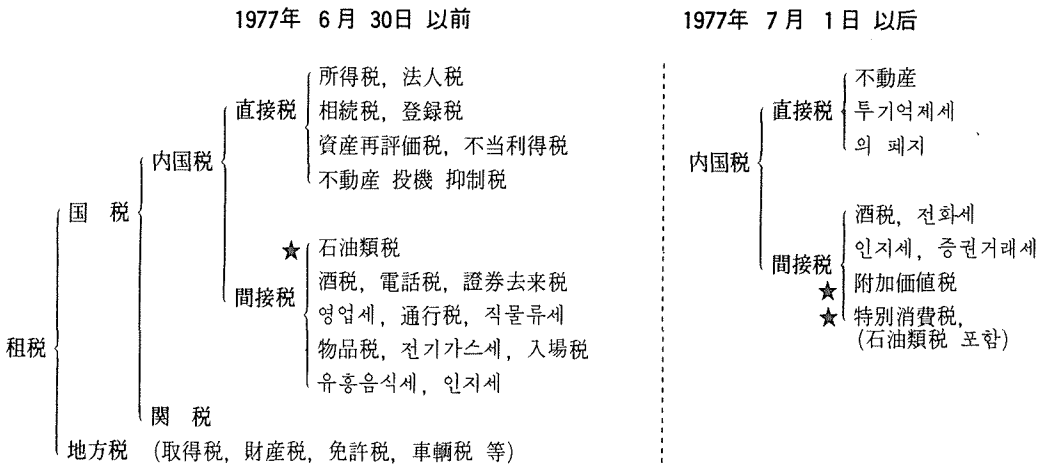
間接稅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石油類稅도 稅額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石油類製品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者,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者이며, 稅額을 실제로 부담하는 担稅者는 제품을 소비하는 自然人 또는 法人이다.

이를 다시 풀이하면,

消費者價格 = 製品의 工場渡價格 (A) + 石油類稅 (A × 稅率) + 流通機構의 手数料로서 소비자는 石油類稅가 포함된 가격을 생산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나 石油類稅는 제품 공급자의 收入이 될 수 없고 정부에 全額 납부되어야 한다.

石油類稅의 稅目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表 1>을 작성하여 보았다.

<表 1>



### 4. 石油類稅 賦課品目과 稅率 및 稅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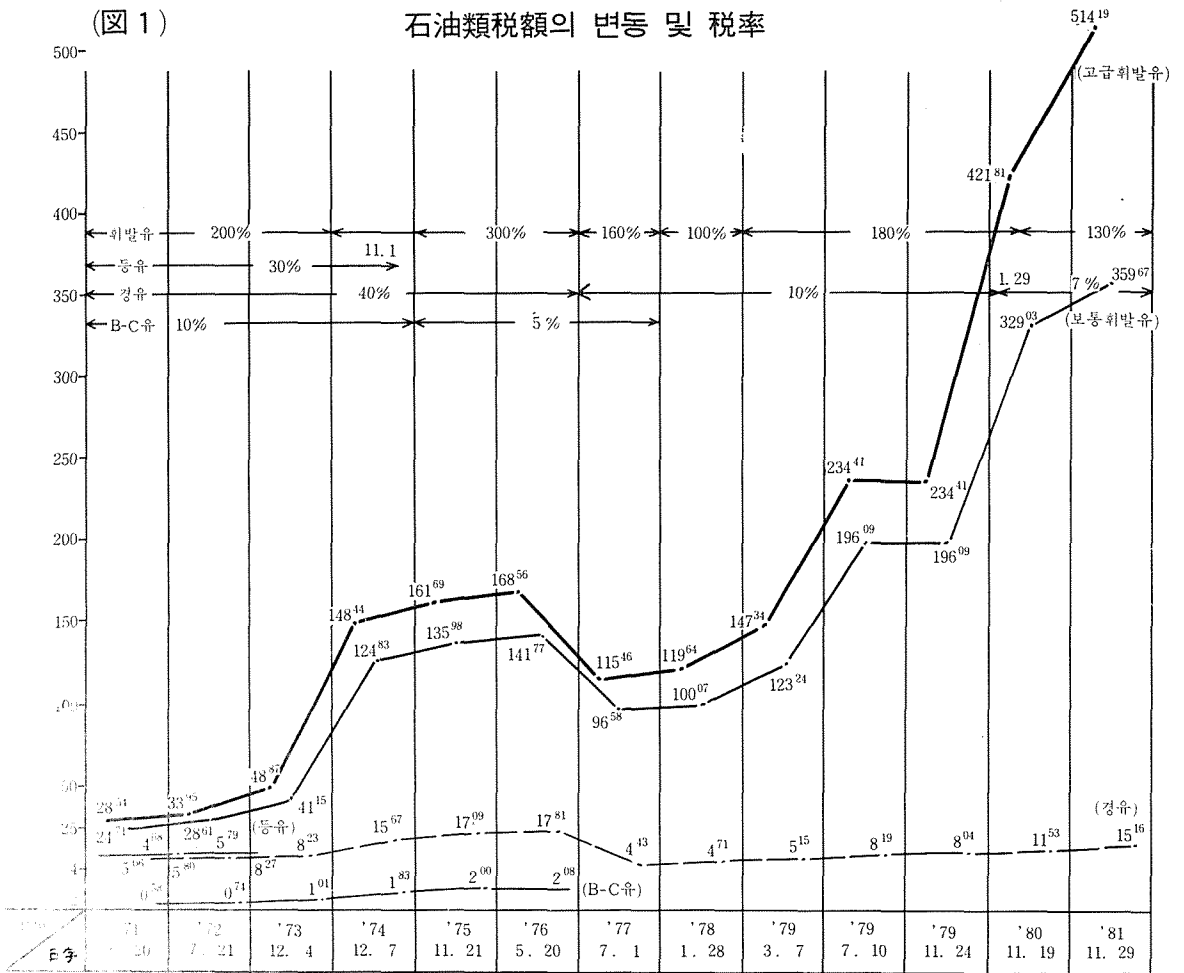
그러면 이러한 石油類稅의 稅收규모가 큰 것은 무엇 때문인가. [圖 1]을 보면, 우리나라의 石油類製品에 부과되고 있는 稅金이 매우 高率이며 또 高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油 등 4大油種의 稅率을 보면, 74년 1월 13일까지는 휘발유(고급 및 보통) 200%, 燈油 30%, 輕油 40%, 벙커C油 10%의 稅率로 과세하였고, 74년 1월 14일부터 휘발유만 200%에서 300%로 稅率을 引上하였다. 74년 11월 1일을 기하여 庶民

用品인 燈油의 과세를 廢止하였으며 74년 12월 7일부터는 벙커C油의 세율을 50%로 引下했다. 77년 7월 1일부터 완전히 벙커C油에 대한 과세를 廢止했고 輕油에 대한 세율도 40%에서 10%로 引下하고 휘발유稅도 160%로 下向調整했다.

77년 7월 1일 特別消費稅 시행과 더불어 課稅品目은 휘발유와 輕油의 두 품목만으로 제한되었다. 결국 天文学的 數値라고 할만한 石油類稅 賦課徵收実績이 經濟成長에 힘입은 石油類製品 需要增加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高率의 稅率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表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74년実績이 前

(圖 1) 石油類稅額의 변동 및 稅率



(註) 1. 1979년을 除外하고는 年中 數次의 調整이 있었을 경우 그해 最終數値만을 記入하였음.  
2. 稅率은 실제 適用值임.

〈表2〉 内国税 - 税目別 徴収 実績

区分 税目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1) 内国税計	218,099	100	39.4	283,799	100	30.1	355,496	100	25.3	374,340	100	5.3	439,121	100	17.3	717,976	100	63.5
2) 直接税計	110,422	50.6	42.1	138,605	48.8	25.5	178,456	50.2	28.8	175,363	46.8	△ 1.7	198,544	45.2	13.2	313,072	43.6	57.7
3) 間接税計	102,932	47.2	36.8	141,557	49.9	37.5	172,604	48.6	21.9	186,589	49.9	8.1	299,539	52.3	23	383,745	53.5	67.2
7. 附加価値税																		
4. 特別消費税																		
1. 石油類税	14,787	6.8	30.1	21,262	7.5	43.8	31,757	8.9	49.4	34,818	9.3	9.6	37,438	8.5	7.5	103,091	14.4	175.4
2. 酒税 外	88,145	40.4	-	120,295	42.4	36.5	140,847	39.7	17.08	151,771	40.6	7.8	262,101	43.8	72.7	280,654	39.1	7.1
4) 過年度徴収	1,631	0.8	89.7	1,983	0.7	21.6	2,036	0.5	2.7	4,533	1.2	122.6	2,745	0.6	△39.4	7,450	1.0	171.4
5) 印紙徴収	3,114	1.4	19.5	1,654	0.6	△46.9	2,400	0.7	45.1	7,855	2.1	227.3	8,293	1.9	5.6	13,709	15.9	65.3

区分 税目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実 績	構成比	対前年 増加比	
1) 内国税計	1,012,291	100	41.0	1,370,532	100	35.4	1,675,180	100	22.2	2,252,546	100	34.5	3,037,510	100	34.8							
2) 直接税計	380,906	37.6	21.7	548,081	40	43.9	606,710	36.2	10.7	842,036	37.4	38.8	1,124,965	37	33.6							
3) 間接税計	568,652	56.2	48.2	769,648	56.2	35.4	1,028,015	61.4	33.6	1,382,837	61.4	34.5	1,873,439	61.7	35.5							
7. 附加価値税							241,573	14.4	-	835,175	37.1	245.7	1,087,779	35.8	30.3							
4. 特別消費税							68,029	4.1	-	205,971	9.1	302.7	273,934	9	133							
1. 石油類税	106,724	10.5	3.5	142,276	10.4	33.3	133,786	8	△ 6	120,536	5.4	△ 9.9	210,606	6.9	174.7	362,714						
2. 酒税 外	461,928	45.7	64.6	627,372	45.8	35.8	584,762	34.9	△ 6.8	221,155	9.8	△ 62	301,090	10	136.1							
4) 過年度徴収	49,961	4.9	570.6	38,200	2.8	23.5	12,127	1.3	△44.7	2,776	0.1	△86.9	1,789	0.1	△35.5							
5) 印紙徴収	12,772	1.3	△ 6.8	14,603	1.0	14.3	19,328	1.2	32.4	24,897	1.1	28.8	37,317	1.2	19.9							

年對比 175% 증가, 79년에 전년 대비 74% 증가를 보인 것은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200%에서 300%로, 100%에서 180%로 上向조정한 결과이다. 景氣上昇期인 77년과 狂的 景氣라고 표현되었던 78년의 경우를 보면, 77년 석유류제품 소비실적은 前年の 130,403千Bbl에서 16% 증가된 151,203千Bbl에 이르렀고, 78년에는 전년에 비해 10.4% 증가한 166,896千Bbl에 달했으나, 石油類稅額은 전년에 비해 각각 6% 및 9% 감소되었다. 이는 [圖1]에 나타난 바와 같이 77년 7월 1일 휘발유에 대한 부과세율이 300%에서 160%로, 78년 1월 28일에 다시 100%로 下向조정된 것에 기인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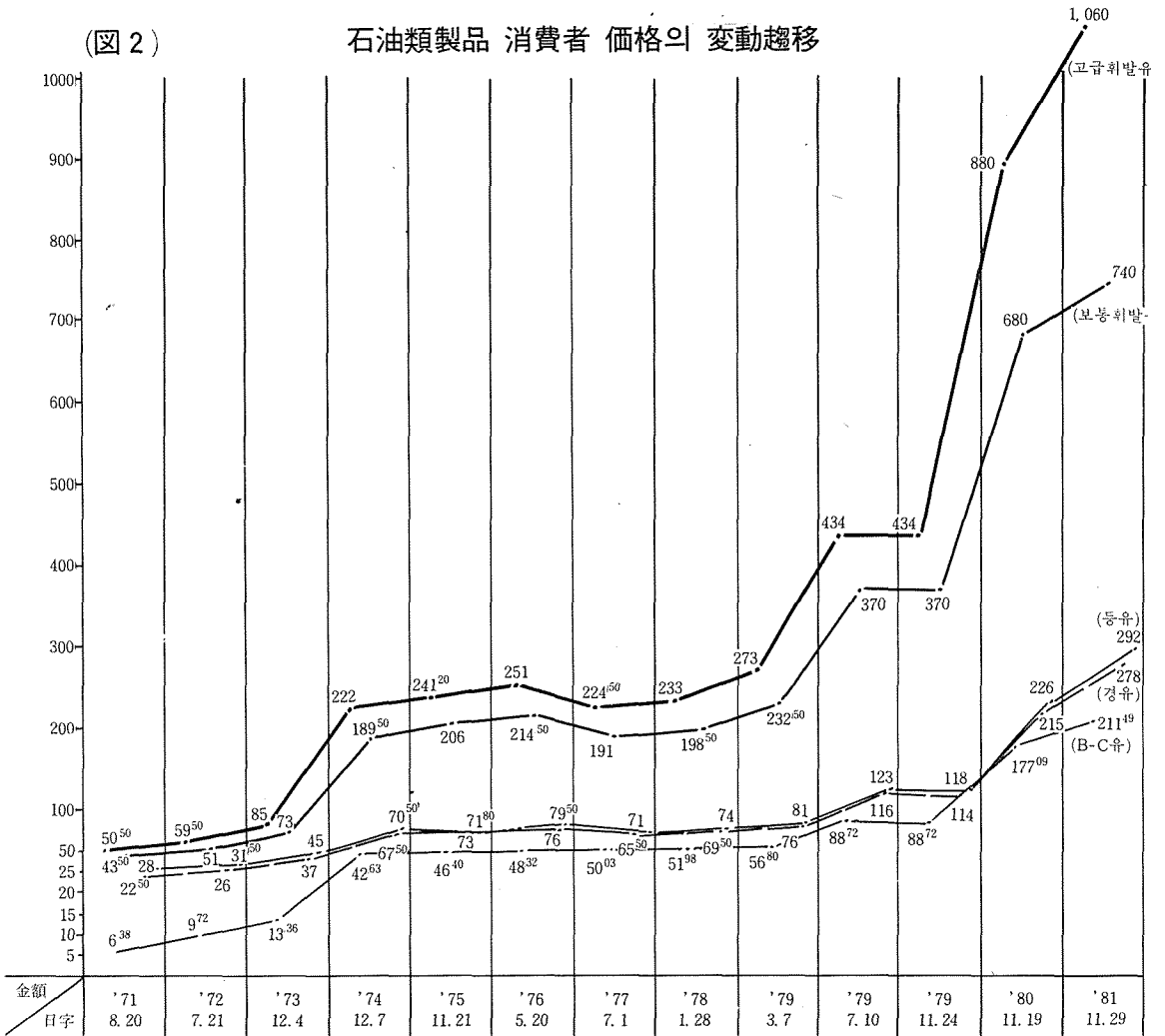
### 5. 石油類稅와 價格과 需要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석유류세는 석유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法人의 收入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지만, 需要者の 消費價格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價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이 상관관계는 [圖1]과 [圖2]를 비교해 보면, 더욱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물론 가격이란 工長渡價格과 稅額의 集合體이므로 공장도가격이 無視되어도 좋다는 논리는 절대로

(圖 2)

石油類製品 消費者 價格의 變動趨移



(註) 1979年만 除外하고 1年中 價格變動이 數次에 걸쳐 있었을 경우 該當年度의 最終수치만을 고려하였음.

있을 수 없으며, 특히 非課稅品目에는 이 명제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高率의 石油類稅가 부과되는 휘발유의 경우만 살펴보기로 한다.

74년중에는 6차에 걸친 工場渡價格 및 稅率의 調整이 있었고, 12월 7일에 결정된 消費者價格을 보면 고급휘발유가 리터당 222원, 보통휘발유가 189.50원였다. 이는 73년 12월 4일에 告示된 가격인 리터당 85원 및 73원과 비교해 볼때 각각 261%, 259.6%씩 상승된 것이다. 그러나 공장도가격의 인상은 두 제품 모두 102%에 그쳤으므로 공장도가격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은 稅率을 200%에서 300%로 上向調整한데 연유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77년 7월 1일 政府가 석유류제품의 공장도가격은 上向조정했으나, 稅率을 휘발유는 300%에서 160%로, 輕油는 40%에서 10%로 引下함

으로써, 消費者價格은 [圖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下落하였다.

우리나라 석유류제품 需要의 價格彈力性은 아직 公式的으로 分析된 경우가 없어서, 각 제품의 價格과 需要의 함수關係를 명확히 論하기는 어려우나 重質油의 수요는 價格彈力性이 극히 낮으며, 輕質油 특히 휘발유의 경우는 탄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表3>과 [圖3]에서 알 수 있듯이 74년 휘발유 가격의 急上昇으로 需要가 전년대비 33% 감소했고 75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73년 對比 36.2%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余他 製品需要는 變動이 없었다.

### 6. 石油類稅와 消費構造

<表3> 석유류 제품 소비 실적(한국)

(단위: 천배럴)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물	량	물	량	물	량	물	량	물	량	물	량	물	량	물	량	물	량	물	량	
휘발유	6,240		6,139		6,544		4,389		4,176		5,273	6,952	7,915	8,633	7,019						
등유	6,799		7,195		6,591		7,309		8,214		9,241	10,353	12,158	14,475	12,883						
경유	13,202		14,706		17,854		18,355		20,935		25,807	29,985	34,956	37,200	37,860						
중유	45,018		48,094		58,753		58,842		64,618		71,839	81,996	88,723	100,087	97,577						
기타유	7,360		10,052		14,188		15,803		15,675		18,243	21,917	23,144	25,637	28,225						
계	78,619		86,186		103,030		104,698		113,618		130,403	151,203	166,896	186,032	183,564						

주 1) 등유에는 제트유 포함  
 자료: 한국석유개발공사「석유사전」

<表4> 各國의 石油類稅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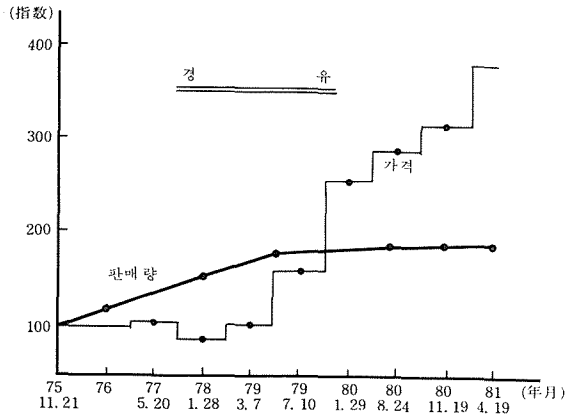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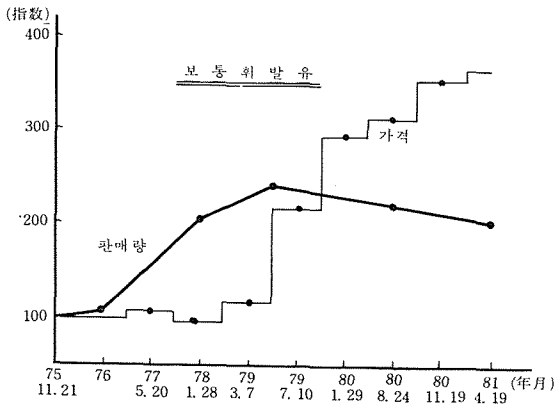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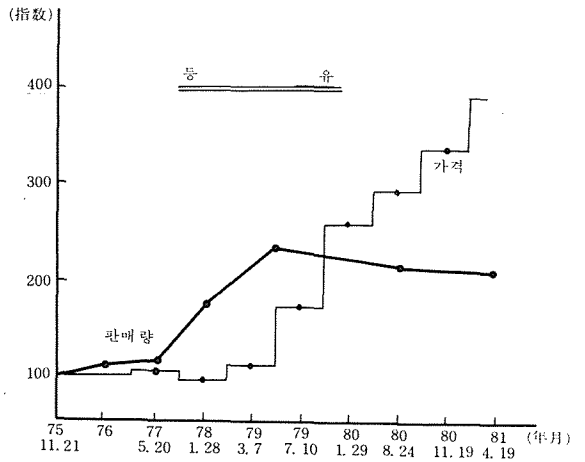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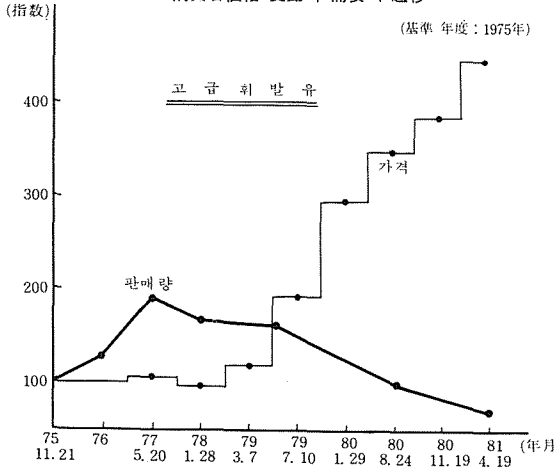
区分 年度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美 国		台 湾		日 本		美 国		台 湾		日 本	
	가 격 ¢/Gal	연방세	가 격 元/ℓ	貨物稅	가 격 ¥/kl	gasoline 稅	가 격 ¢/gal	연방세	가 격 元/ℓ	貨物稅	가 격 ¥/kl	gasoline 稅
1975			14	2.18 (15.6%)		34,500 (39%)			13	2.02 (15.5%)	88,595	34,500 (39%)
1976			14	2.18 (15.6)		43,100 (45.3)			13	2.02 (15.5)	95,151	43,100 (45.3)
1977	65	12 (18.5%)	14	2.18 (15.6)		43,100 (43.6)	60	12 (20%)	13	2.02 (15.5)	98,872	43,100 (43.6)
1978	68	13 (19.1)	14	2.18 (15.6)		43,100 (47.4)	62	13 (21)	13	2.02 (15.5)	90,987	43,100 (47.4)
1979	75	13 (17.3)	15	2.23 (14.9)		53,800 (49.7)	68	13 (19)	14	2.09 (15)	108,174	53,800 (49.7)
1980	115	14 (12.2)	24	3.57 (14.9)		53,800 (38.1)	109	14 (12.9)	23	3.43 (15)	141,398	53,800 (38.1)
1981	134	14 (10.5)	28	3.57 (12.8)		53,800 (34.5)	124	14 (11.3)	27	3.43 (12.7)	155,927	53,800 (34.5)

特別企劃：特消稅와 石油

区分 年度	등 유		경 유				B - C 유			
	台 灣		美 国		台 灣		日 本		台 灣	
	가 격 元 / l	貨物稅 C/gal	가 격 C/gal	연방세	가 격 元 / l	貨物稅	가 격 ¥/kl	경 유 거래세	가 격 元 / l	貨物稅
1975	5.7	0.70 (12.3%)			4.8	0.77 (16.1%)	33,290	15,000 (45.1%)	2.75	0.28 (10.2%)
1976	5.7	0.70 (12.3)			4.8	0.77 (16.1)	36,120	19,500 (54)	2.75	0.28 (10.2)
1977	5.7	0.70 (12.3)	50	13 (26%)	4.8	0.77 (16.1)	36,353	19,500 (53.6)	2.75	0.28 (10.2)
1978	5.7	0.70 (12.3)	54	14 (25.9)	4.8	0.77 (16.1)	31,992	19,500 (61)	2.75	0.28 (10.2)
1979	7	0.66 (9.4)	57	14 (24.6)	6	0.89 (14.8)	39,582	24,300 (61.4)	2.85	0.28 (9.8)
1980	11.5	1.05 (9.1)	97	15 (15.5)	10.5	1.56 (14.9)	69,043	24,300 (35.2)	6.2	0.21 (3.4)
1981	14.5	1.05 (7.3)	116	15 (12.9)	13.5	1.56 (11.6)	83,991	24,300 (28.9)	7.6	0.21 (2.8)

〈註〉 1. 日本의 경우 고급휘발유와 보통 휘발유의 가격은 相異하나 賦課되는 稅額은 같다.  
 2. 1975~1976年의 미국 자료는 미비하여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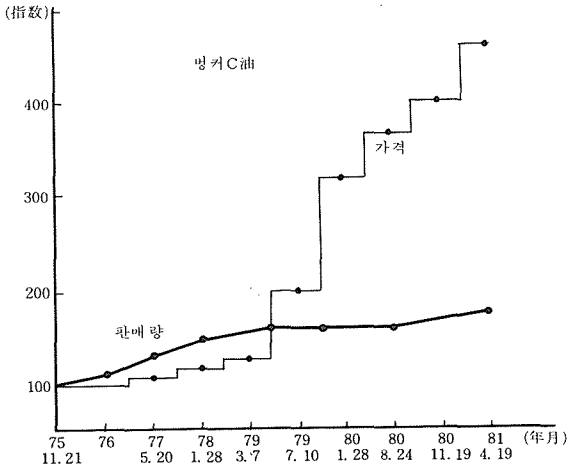
〔圖3〕 消費者價格 變動과 需要의 趣移



財政學과 經濟學에 대한 깊은 識見을 갖추지 못한 채 우리나라의 石油類稅制와 消費패턴에 대해 論하고자 할때 스스로도 무리함을 느끼게 되나, 본

稿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과제이기에 이 문제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現況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인 유대가 가장 밀접한 美國과 日本, 그리고 輸出市場에서 競爭이 심한 台灣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定率的 從價稅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比較 3國이 모두 공장도가격에 一定額을 부과하는 定額稅를 채택하고 있다. 燈油, 輕油 및 병커C油에 부과되는 稅額(稅負擔率)은 비교대상국들과 거의 동일 수준이다. 그러나 휘발유에 대한 稅額(세부담율)은 엄청나게 差異가 난다. 선진국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한 美國과 日本의 경우는 차치하고 國防費부담이 막중하고, 非資源開發途上國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인 台灣의 휘발유세부담율이 13%정도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는 製品別 消費実績을 비교한 것으로, 경제발전도 즉 國富의 수준과 消費構造의 輕質化는 正比例함을 보여준다. 특히 휘발유의 경우 美國은



<表 5>

韓國, 美國, 日本, 台灣의 석유제품소비구조

(단위: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휘발유	韓國	7.9	7.1	6.4	4.2	3.7	4.1	4.6	4.8	4.6	3.8
	美國	-	-	-	-	43.3	42.3	40.8	41.5	40.8	-
	日本	9.2	9.6	9.2	9.3	11.0	10.8	10.5	11.2	12.3	15.6
	台灣	8.3	9.3	9.0	9.7	9.7	8.3	8.8	7.9	-	-
등유	韓國	8.7	8.4	6.4	7.0	7.2	7.1	6.9	7.3	7.8	7.0
	美國	-	-	-	-	7.6	7.0	7.0	6.9	7.5	-
	日本	7.6	7.9	8.6	8.6	9.4	10.0	9.4	9.9	9.9	11.9
	台灣	6.3	3.7	4.5	5.6	5.6	0.2	1.0	5.3	-	-
경유	韓國	18.2	18.7	19.2	19.1	20.0	22.1	21.6	22.6	22.0	20.6
	美國	-	-	-	-	18.3	19.1	19.3	19.5	19.4	-
	日本	5.6	12.0	6.2	12.9	17.8	13.7	13.3	6.6	7.6	9.7
	台灣	14.6	13.0	11.9	33.3	33.3	31.3	14.7	14.9	-	-
중유	韓國	55.9	54.2	54.3	54.7	55.3	52.8	52.5	51.5	51.8	53.2
	美國	-	-	-	-	15.0	16.2	16.6	16.2	14.7	-
	日本	51.0	43.5	49.7	42.7	38.2	40.7	38.2	44.2	42.0	46.9
	台灣	58.3	59.3	61.2	40.3	36.1	44.8	62.7	60.5	-	-
기타	韓國	9.4	11.7	13.8	15.1	13.8	14.0	14.5	13.9	13.8	15.4
	美國	-	-	-	-	15.8	15.4	16.4	15.9	17.5	-
	日本	26.6	27.1	26.3	26.5	23.6	24.7	28.6	28.1	28.1	16.0
	台灣	12.5	14.8	13.4	11.1	15.3	15.4	12.7	11.4	-	-

(註 1) 등유에는 JET油 포함



全油類製品需要의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日本도 경제발전도에 맞추어 매년 需要比率이 증가되고 있고, 國土가 좁은 台灣도 上昇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휘발유의 소비증가는 그 나라의 製品低價政策에 기인하며, 제품의 가격은 이에 부과되는 稅額에 크게 左右됨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 과세율의 상승으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天井不知로 치솟아 휘발유 需要比率이 계속 減少되었으며, 80년에는 전석유류제품 수요중 휘발유수요가 3.8%에 불과하게 되었다.

### 7. 우리나라 石油類稅의 문제점

精油産業의 입장에서 보면 石油類製品의 消費패턴을 논의할 때, 美國의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며, 石油類稅라는 용어자체에도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사회적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美國의 消費패턴으로의 접근을 무분별하게 시도할 수는 없으며, 국가 財政需要 및 課稅平等이론상 石油類稅의 전면廢止는 성립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狀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의 각 석유소비국들은 한정된 石油資源을 단순한 기초燃料로서 사용하는 대신 輸送이나 化學原料로서의 소비비율을 높여가는, 즉 유류소비패턴의 輕質化를 추구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소비의 경질화를 위해서 政府는 기초연료의 대체정책, 열효율 증대기술의 개발 등 뛰어난 일련의 省에너지 政策의 수립과 施行을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輕質油의 소비자가격 저하를 통해 수요의 증대 또는 창출을 유도해 가야한다. 앞서 여러번 강조하였듯이 輕質油의 消費者價格引下를 위해서는 이에 부과되는 石油類稅의 下向조정이 第1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석유류세의 문제점과 改善方案을 재요약하면, 첫째 석유류세는 特別消費稅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별소비세의 입법취지는 국가 財政收入의 확보와 더불어 需要불가결하지 않은, 즉 국민의 기본생활에 주요도가 높지 않은 물품의 消費

抑制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휘발유에 대한 기본세율을 160%로 하여 寶石(기본세율 100%)의 소비보다 억제하는게 타당할까? 이에 대해 누구도 정당한 논리를 정립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租稅收入面에서 보더라도 너무 短見的인 배려가 행해지고 있는 것 같다. 輕質油의 소비가 증대되면 精油業의 經營상태가 호전되고, 다른 선진국에서와 같이 기초연료인 重質油와 公업용원료의 製品價格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저렴한 연료와 원료의 생산구조속에서 國際競爭力의 증대로 輸出의 伸張 그리고 각산업의 생산활동의 증대와 收益 증대로 다른 직접, 간접租稅部門의 稅收入增大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국민소득의 증대가 크나큰 財政收入의 확대로 발전되어 石油類稅收入의 減少를 補填 또는 上廻한다면 一石三鳥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징수방법이 안이한 間接稅부문의 비중이 높은 後進國租稅政策을 고수하며 어떻게 經濟中進國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셋째, 앞서 [圖3]에서 나타나 있듯이 높은 세율로 인해 高價格인 輕質油의 需要 減退(물론 不景氣의 원인도 있다)는 精油工場의 設備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需要變動이 없는 重質油 등 일부 석유류제품의 輸入이 不可避하게 되었는데, 산유국과의 原油導入契約履行을 파기하지 않는 한 2重의 外貨浪費가 되는 셈이다.

### 結 言

이록해야 할 경제개발의 財源마련과 國防費의 부담등으로 稅政當局이 겪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치유되어야 할 患部가 있다면 되도록 빨리 메스를 가해야 할 것이고, 指向해야할 목표가 있다면 다가올 어려움을 두려워 하지 말고 軌道를 修正하는 과감한 결단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안이함 속에 안거한다면 발전이 아닌 後進이 될 것이며, 현재의 등우리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의 한 例로서 금년 石油類稅稅收는 年初計劃과는 많은 差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느냐?

높은 稅率의 限界를 直視하고 새로운 活路를 빨리 찾기를 기대하는 것이 한낱 꿈이 아니기를 기원한다. \*